일본의 모욕죄 처벌 강화, 주요 내용과 향후 방향

황태정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 박사

1. 들어가며

2022년 6월 13일, 모욕죄의 법정형에 징역과 벌금 등 무거운 선택형을 추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본 제208대 국회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종래 사람을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30일 미만의)구류 또는 (1만 엔 미만의)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던 형법 제231조를 개정하여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로 바꾼 것이다. 모욕죄의 법정형 상향 외에 '징역'과 '금고'를 통합한 '구금형'을 창설함으로써 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형벌의 종류를 개편한 이 개정법[1]은 같은 해 7월 7일 시행되었다. 모욕죄의 법정형 인상과 함께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교사·방조의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고,[2] 공소시효 또한 기존의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

사실을 적시하지 않으면서 공연히 타인에 대해 경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람의 외적 명예를 저하시키는 모욕죄는 종래 법익침해의 위험이나 정도가 명예훼손죄에 미치지 못하는

1) 다만 시행은 공포 후 3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일본 형법은 "구류 또는 과료만으로 처벌할 죄의 교사자 및 종범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벌하지 아니한다"(제64조)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종래 모욕죄의 교사·방조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었다.

극히 가벼운 유형의 명예침해를 처벌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진 인터넷, SNS 등 통신수단의 광범위한 보급은 개인의 명예침해의 양상을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종래의 대면성 명예침해도 피해자인 개인과 그를 둘러싼 사회생활 관계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지만, 인터넷상에 확산된 명예침해는 그 가해의 익명성, 피해의 은폐성, 광범위한 확산성, 장기간 보존성 등으로 인해 그로 인한 피해가 종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달라지게 된 것이다. SNS 등을 통해 파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는 가혹한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번 모욕죄의 엄벌화 개정인 셈이다.

아래에서는 형법상 모욕죄 엄벌화 개정의 계기가 된 사건과 그 처리 경과, 이를 둘러싼 일본의 입법·정책 주체들의 동향을 되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사건의 발단 및 경과

1907(明治40)년 이래 100년 이상 '구류 또는 과료'의 불법 수준으로 여겨져 왔던 모욕죄의 법정형 대폭 상향은 한 유명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TV 프로그램 진행 중의 언동을 둘러싸고 SNS에서 반복적으로 비방중상을 받아 왔던 모 여성 연예인이 2020년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3] 이 사건을 계기로 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악의적인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가 크게 주목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정부·여당 및 시민단체의 대책 마련이 시작되었다.

사건 직후 사안의 중요성을 감지한 정부는 사건 발생 3일 만에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이라 함)상의 투고자 정보공개절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하고, 제도 개정을 포함한 신속한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타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당시 총무대신(행정안전부장관)은 2020년 5월 26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상의 비방중상 억제, 적절한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총무성 내에 전문가 회의를 설치하였다고 밝히며, 향후 ①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에 의해 공개 대상이 되는 발신자 정보의 추

3) 후지TV의 인기 리얼리티 프로그램 '테라스 하우스'에 출연하고 있던 프로레슬러 출신 연예인 키무라 하나(木村花) 씨는 방송출연 중 한 언동을 이유로 SNS를 통해 "다시 TV에 나오지 마라", "빨리 사라져 줘", "언제 죽을거야?" 등의 반복적 비방중상을 받게 되자,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2020년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듬해인 2021년 같은 프로레슬러 출신 어머니 키무라 쿄코(木村響子) 씨의 호소로 기소가 이루어져 비방중상 내용의 댓글을 단 오사카부의 20대 남성, 후쿠이현의 30대 남성 등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과료의 금액이 9,000엔에 불과하여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URL: https://www.oricon.co.jp/special/59022/ 참고 (2022. 12. 12. 최종검색)

가, ② 발신자 정보 공개 절차의 원활화, ③ 익명으로 권리 침해 정보를 게시한 경우 발신자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4]

3. 정당 및 시민사회의 대응

2020년 6월 1일 정부는 법무성에 '인터넷상의 비방중상 등에 대한 법무성 프로젝트팀'을 설치하였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등도 각각 '인터넷상의 비방중상·인권침해 등 대책 검토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정부의 대책 마련에 협력하였다. 6월 16일에는 자민당 정무조사회 '디지털사회추진 특별위원회' 및 '인터넷상 비방중상·인권침해 등 대책 프로젝트팀'의 좌장 미하라 준코(三原じゅん子)는 모리 마사코(森まさこ) 법무대신을 예방하여 인터넷상 비방중상·인권침해 등의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신자 정보의 공개절차 등 민사상의 대응, 형사법상 대응, 인권옹호기관 등에 의한 대응 강화 등을 요구하였다.[5]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이러한 대응은 1년 뒤인 2021년 6월 17일 구체적인 정책안으로 성안되어 정부부처에 전달되었다. 자민당 '정보통신전략조사회'(회장: 야마구치 슌이치(山口俊一) 중의원의원) 산하 '인터넷상 비방중상 대책 등 소위원회'(위원장: 야마시타 타카시(山下貴司) 중의원의원)는 '인터넷상 비방중상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제언'[6]을 이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인 키무라 쿄코(木村響子) 씨에게 전달하고, 정부 관련 부처에 이를 제안하였다. 긴급제언은 인터넷상 교류·활동이 일생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젊은이들에게 발언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계도함과 동시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고려하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7] 이러한 대오에는 민간기업들도 가세하였다. 사건 발생 직후인 5월 26일, SNS사업자로 구성된 사단법인 '소셜미디어 이용환경정비기구'(대표이사·소가베 마유(曽我部真裕) 외)도 타인에 대한 괴롭힘이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을 의도한 콘텐츠의 게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셜미디어상의 명예훼손·모욕 등을 의도한 콘텐츠의 투고 행위 등에 대한 긴급성명'[8]을

4) URL: https://www.soumu.go.jp/menu_news/kaiken/01koho01_02000917.html (2022. 12. 12. 최종검색)
5) URL: https://www.moj.go.jp/hisho/kouhou/hisho06_00115.html (2022. 12. 12. 최종검색)
6) URL: https://www.jimin.jp/news/policy/201741.html (2022. 12. 12. 최종검색)
7) 긴급제언은 ① 피해의 심각화 예방: 인터넷상 비방중상의 피해자를 위해 인터넷 상담대응과 고충처리절차 충실화, 각급 학교 홍보 및 유관기관 연계, ② 시대상에 부합하는 형사법: 지나치게 가벼운 모욕죄 벌칙 적정화, 적절한 범죄유형의 향방 검토, ③ 발신자 정보 개시 적의 추진: 프로바이더책임제한상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질적 비방중상 등의 발신자 특정 용이하게 하고 해당 로그 삭제 금지 등 추진, ④ 플랫폼사업자의 적극적 대응 촉진: AI 활용을 포함하여 삭제, 모니터링 및 효과검증 계속, ⑤ 회사법상 외국회사 등기 철저: 일본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해외 SNS사업자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실태파악 및 외국회사 등기 철저, ⑥ 정보화스쿨(GIGA스쿨) 구상 실현: 각급 학교의 연령에 맞춘 정보윤리교육 및 교원연수 강화 추진, ⑦ 수사기관 체제 강화: 직근 경찰서의 적절한 피해신고 수리 및 적극적 수사 실시, 각급 경찰 및 검찰 기관의 전문적 대응체제 강화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후 6월 29일에는 민간 IT기업으로 구성된 '세이퍼 인터넷 협회(Safer Internet Association)'가 '비방중상 핫라인'을 개설하였다. 협회는 이후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상 비방중상 관련 신고 및 삭제요청을 접수하였고, 9월 22일에는 핫라인 운영을 개시한 6월 29일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 인터넷상 비방중상 관련 신고 및 삭제요청의 접수·처리 결과를 '개요자료'[9]의 형태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4. 정부의 대응: 형법 개정 경과

2020년 6월 1일 정부는 법무성에 '인터넷상의 비방중상 등에 대한 법무성 프로젝트팀'을 설치하고 이를 정책입안총괄심의관이 통괄하도록 하여 모욕죄 벌칙의 향방을 논의하였다. 6월 16일 자민당 정무조사회의 제언 등을 참고하여 모욕죄에 징역형을 도입할 방침을 굳혔다. 법

8) 성명은 ① 괴롭힘이나 명예훼손·모욕 등을 의도한 콘텐츠의 투고 금지 및 금지사항 해당 행위 파악 시 서비스 이용 정지 등 조치 마련, ② 특별위원회의 대처 내용 공표 및 대처의 유효성 검증 등 대처의 투명성 향상, ③ 건전한 소셜미디어 이용을 지향하는 계발 활동 및 정보윤리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실시, ④ 참가 사업자 각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어플리케이션에 계발 콘텐츠 게재, ⑤ 수사기관에 대한 협력 및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에 의한 정보 제공, ⑥ 정부 및 관계 단체와의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URL: https://www.jilis.org/seishonen/pressrelease_20200526.pdf (2022. 12. 12. 최종검색)
9) 개요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2개월간 신고자 1,665명으로부터 3,143건의 신고를 접수하였고, 이 가운데 832건(26%) 2,013URL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아 이를 각 회원사에 통지한 결과 1,582URL(79%)의 삭제조치가 이루어졌다. 통계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URL: https://www.moj.go.jp/content/001357561.pdf 참조. (2022. 12. 12. 최종검색)

무성은 법무대신의 자문에 따라 민사법·형사법 기타 법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심의할 목적으로 법무성 대신관방 사법법제부 사법법제과 소관으로 '법제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10] 법무성은 이번 모욕죄 법정형 상향과 관련하여서도 법제심의회 형사법(모욕죄 법정형 관계) 부회(部會)(이하 '법제심의회'라 함)를 설치하였고, 2021년 9월부터 2회(9월 22일, 10월 6일)에 걸쳐 법령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11]

법제심의회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방중상 등에 대한 모욕죄의 적용 사례나 양형 자료를 검토하였는데, 최근 5년간 양형자료를 보면 매년 약 25명의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구류는 단 한 번도 선고된 바 없고 모두 과료가 선고되었는데, 거의 9,000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종전의 법정형으로는 억지력이 불충분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종전의 법정형에 1년 이하의 징역·금고와 30만 엔 이하의 벌금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형태의 법정형 인상이 권고되었다.

〈표 1〉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양형 상황[12]

区分 / 年次	拘留 [30日 未満]	科料 [1万円未満]				
	総数 (人)	総数 (人)	9,000円 以上	5,000円 以上	3,000円 以上	3,000円 未満
平成28年	0	23	22	1	0	0
平成29年	0	16	14	1	1	0
平成30年	0	24	24	0	0	0
令和元年	0	27	26	0	1	0
令和2年	0	30	30	0	0	0

区分 / 年次	懲役 [3年以下]											禁錮 [3年以下]		罰金 [50万円以下]						
	総数 (人)	3年	うち全部執行猶予	2年以上	うち全部執行猶予	1年以上	うち全部執行猶予	6月以上	うち全部執行猶予	6月未満	うち全部執行猶予	総数 (人)	総数 (人)	50万円	40万円以上	30万円以上	20万円以上	10万円以上	10万円未満
平成28年	20	0	0	2	1	14	9	4	3	0	0	0	122	6	3	30	49	33	1
平成29年	22	0	0	1	1	18	17	3	3	0	0	0	130	2	3	41	57	27	0
平成30年	12	0	0	1	1	8	7	3	2	0	0	0	128	6	0	30	63	28	1
令和元年	24	0	0	3	2	15	12	6	4	0	0	0	153	6	4	39	61	42	1
令和2年	9	0	0	0	0	7	7	2	2	0	0	0	170	2	3	46	72	46	1

10) 1949(昭和24)년 6월 1일부터 법무성조직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11) URL: https://www.moj.go.jp/shingi1/housei02_003010 (2022. 12. 12. 최종검색)
12) 출처: 법제심의회 형사법(모욕죄 법정형 관계) 부회 제1회 회의(2021. 9. 22). 배포자료2.

다만 법제심의회는 이러한 법정형 인상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하여 해당 행위 전반을 일률적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모욕죄의 경우 기존에 명예훼손죄와의 사이에 행위태양과 그에 따른 법정형의 차이가 컸는데, 모욕죄의 행위태양에 따른 불법의 정도를 다층화함으로써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불법을 연속적인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명예침해행위 중 당벌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인상으로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당벌성이 낮아 처벌 필요성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개정 이전과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취지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 같은 법제심의회 논의를 전제로 할 때, 사실적시 여부에 따라 구분되어 온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가 과연 명확히 드러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법제심의회가 법정형의 폭을 넓힌 모욕행위의 가벌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기존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아온 행위와 어떠한 성질의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히 밝혔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다.[13]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2년 3월 8일, 인터넷상 비방중상을 억제하기 위한 '모욕죄' 엄벌화 규정 및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한 '구금형' 규정의 신설을 담은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각의 결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 2022년 6월 13일 제208대 국회에서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동 법률안은 7월 7일자로 시행되어 효력을 갖게 되었다.

한편 일본변호사연합회(日弁連)는 2022년 3월 17일 정부가 마련한 모욕죄 엄벌화 형법 개정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는 그 방향성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모욕죄의 법정형 인상에 관한 의견서'[14]를 발표하였다. 그 취지는 다음 두 가지이다.

① 모욕죄에 대해 법정형을 인상하고 징역형을 도입하는 것은 정당한 논평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며, 인터넷상의 비방중상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반대한다.

② 인터넷상 비방중상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한 대책으로는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을 개정하여 발신자 정보 공개의 요건을 완화하고, 손해배상액을 적정화하는 등 민사상 구제수단의 충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5. 대안의 모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이러한 정부 주도의 형사법적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터넷상 명예침해에 대한 대응을 형사법적 방법이 아니라 민사적 또는 다른 대안적 방법에 의하려는 시도가 있어 주목된

13) 1金澤眞理, "侮辱罪の法定刑改正について", 第3回韓日·日韓刑事法研究会資料集(2022. 11). 59–60면 참조.
14) URL: https://www.nichibenren.or.jp/document/opinion/year/2022/220317.html (2022. 12. 12. 최종검색)

다. 인터넷상 비방중상에 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대응[15]이 그 예이다. 2020년 12월 22일 일본 도쿄 북서부에 위치한 군마현(群馬県)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군마현 인터넷상 비방중상 등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群馬県インターネット上の誹謗中傷等の被害者支援等に関する条例)[16]를 제정하여 눈길을 모았다. 조례는 인터넷상 비방중상 등의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현민의 역할을 밝히고,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해 이를 추진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제1조).

조례는 먼저 '비방중상등'을 '인터넷상 비방중상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정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당해자에게 현저한 심리적·신체적 또는 경제적 부담이 강한 정보를 발신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피해자'는 비방중상등으로 인해 평온한 일상생활 또는 경제활동이 저해된 자, '가해자'는 이러한 피해자를 발생시킨 자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조례는 이와 함께 '인터넷 리터러시(문해력)'(インターネットリテラシー)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의 편리성·위험성 및 기본적인 매너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적정한 정보를 발신하고, 인터넷상 트러블을 회피하고, 인터넷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제2조 제4호).

조례는 현(県)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과 행위자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시책을 책정하여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지고(제3조), 이를 위해 국가, 시정촌 등 행정기관, 일본사법지원센터, 피해자지원단체 등과 연계·협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제5조), 인터넷상 정보를 발신하는 자의 표현의 자유를 배려하는 토대 위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의 경감을 포함한 상담체제의 정비(제7조), 현민의 인터넷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시책, 학교 교육과의 연계(제8조), 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 및 계도활동(제9조)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부응하는 현민의 역할로서 피해자가 놓여 있는 상황 및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가 행위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인터넷 리터러시'의 향상에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제4조).

이러한 조례의 지침에 따라 군마현 교육위원회는 SNS를 사용할 때의 주의점 등을 게임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독자적인 교재를 제작하여 현내의 학교에 배포하고, 인터넷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동영상 교재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17] 'tsulunos'에서 공개하고 있다.

15) URL: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lastweek/84272.html (2022. 12. 12. 최종검색)
16) URL: https://www.pref.gunma.jp/page/16946.html (2022. 12. 12. 최종검색)
17) 유튜브 교육자료의 예로는 https://www.youtube.com/watch?v=mTayx8mldis 등 참조. (2022. 12. 12. 최종검색).

6. 마치며 : 요약 및 결론

이번 형법 개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제230조)와 모욕죄(제231조)의 거리는 그만큼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종래 사실적시 여부에 따라 구별되던 양 죄의 실질이 줄어든 법정형의 차이만큼 실제로도 가까워진 것인지, 본래 경미한 명예침해의 유형이었던 모욕죄의 행위태양에 다양한 층위의 악의적 언동들을 어느 정도까지 포섭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그것을 본래 사람의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인지 등 남아있는 의문이 많다. 특히 일본변호사연합회(日弁連)의 의견서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모욕죄의 엄벌화가 정당한 논평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오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경청과 숙고가 필요할 것이다.

명예에 관한 죄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양대 헌법상 기본권이 충돌하는 영역의 문제이다. 이러한 영역에서 형벌에 의한 위하가 강조되는 것은 형벌의 겸억성이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군마현 조례는 전문에서 "인터넷의 보급은 우리 사회에 큰 혜택을 가져오고 있고, 지금 전 세계의 모든 혁신은 인터넷의 존재를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인터넷에도 빛과 어둠이 존재한다. 일단 인터넷에 발신된 정보는 지우기가 곤란하고 피해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만 발신자 자신도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는 사태도 빈발하고 있다. 현민 누구나 피해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누구나 인터넷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심인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피해자 지원' 및 '현민의 인터넷 리터러시 향상'을 향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를 기술하고 있다. 인터넷상 명예침해 문제에 대한 혜안과 향후 이에 대한 대응의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